

**금융기관 범죄의 유형분석과 대책:**

국제금융범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attern Analysis of financial Institution Crime and  
Countermeasures

**금융기관 범죄의 유형분석과 대책:**  
국제금융범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attern Analysis of financial Institution Crime and  
Countermeasures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 목 차

I. 서 론

II. 금융기관과 범죄

III. 국제금융범죄의 실태

IV. 결 론: 국제금융범죄 대응방안

참고문헌

## 1. 서론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증대와 국내적으로 금융시장 자유화의 필요성 대두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외환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외환자유화는 국내외 금융시장으로부터 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투자기회 확대, 금융업체간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산업발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반면,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상수지 악화,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 국내 금융산업의 잠식(蠶食)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세계 선진국으로부터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은 특히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종래의 신흥국가의 부족자본 보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다소 과도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직접투자 자본에 비하여 증권투자 등 투기적 단기성 자본의 유입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OECD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금융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본자유화는 IMF 외환위기라는 우리 금융역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후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계적 외환자유화 추진(2002-2011)을 계획한 바 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이 계획에서 더 나아가 당초 2011년으로 되어 있던 자유화일정을 2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외환자유화 조치에 의해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hub & spokes)가 구축되어 나가는 반면에, 자유로워진 국제금융거래제도에 수반하여 금융허브의 안착을 저해하는 각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금융거래 자유화 진전으로 인해 국제적 투기세력, 범죄조직에 의한 환투기 가능성이나 국제금융범죄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단속실적 추세와 수사사례를 보면 범죄수법이 한층 지능화된 가운데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매우 큰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등 반사회적 국제금융거래사범이 향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제금융거래관련 기관에서는 외환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시민과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외환거래 규정을 올바르게 숙지케 함으로써 국제금융거래사범 양산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검찰청, 관세청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도 국제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국제금융거래범죄를 분석하고 차단함으로써 탈법위험을 최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금융범죄 성격에 대한 일반적 개관 하에 국제금융거래범죄를 중심으로 최근의 국제금융범죄 실태를 분석한 후 국제금융범죄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sup>1)</sup>

---

1) 본 보고서의 내용 중 국제금융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등의 일부 내용은 정웅의 선행 연구(2007)에 제시된 바 있다.

## II. 금융기관과 범죄

### 1. 금융 및 금융시장의 의미

金融(Finance)이란 일상적 의미로는 돈의 중개를 뜻하고 좀더 학리적으로 말한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장래의 원금반환과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신용하고 자금을 유통하는 행위로서 경제주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유통(유통)이라 할 수 있다.

자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큰 흑자경제주체(주로 가계부분)로부터 그 반대인 적자경제주체(주로 기업부분)로 이전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란 자금의 잉여부분과 자금부족부분 간에 이루어지는 화폐의 금융적 거래를 총칭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이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한 거래를 의미한다.<sup>2)</sup>

또한 금융제도란 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금융수단 및 금융시장 등에 관한 총체적인 체계와 규범을 의미하는데 금융제도는 다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을 갖게 된다.

여기서 금융시장은 금융거래 즉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시장 조직으로서 換金性, 收益性, 危險性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자산들이 거래되는 추상적 장소이다. 오늘날의 금

2)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93호로 제정·공포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29호) 제2조 제3호에서는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은 금융거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여신은 당연히 금융거래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시장은 첨단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대량의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금융이 일상화됨으로써 금융거래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은 크게 자금의 유통경로, 자금의 유통형태, 자금의 유통기간 및 제도적인 정형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금융시장은 자금의 유통경로를 기준으로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금융시장'은 자금의 거래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의 최종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주로 직접증권의 매매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으며 직접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증권회사, 단기금융회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간접금융시장'은 양자간에 금융중개기관이 개입하여 직접 또는 간접증권의 매매형태로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대표적인 금융중개기관으로는 은행과 보험회사를 들 수 있는데 간접금융시장의 경우에는 금융중개기관이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과 정보탐색비용 등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직접금융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과 IT의 발달로 일반인의 정보수집 등의 기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직접금융시장이 간접금융시장보다 비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시장은 자금의 유통형태를 기준으로 자금의 유통이 당사자간의 계약형태로 단기유동성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 '신용시장'과, 자금의 유통이 당사자간의 양도가 가능한 증권형태로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 증권이 만기가 장기라는 점이 특징인 '증권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은 자금의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화폐시장(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장기금융시장)'으로 나뉜다. 통상 1년을 기준으로 자금

의 만기가 1년 이하일 경우 ‘단기금융시장’ 또는 ‘화폐시장’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만기와 관계없이 증권이 유동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유동성이 높고 위험성이 적은 것을 화폐자산이라 하는데 이러한 ‘단기금융시장’은 할인시장, 콜시장과 같이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에 대하여 통상 기업의 설비자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금 등 장기자금이 조달되는 경우를 ‘장기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이라고 한다. ‘장기금융시장’은 다시 거래되는 상품에 따라 증권시장, 장기대부시장으로 분류되며, 증권시장은 신규발행증권의 인수가 이루어지는 발행시장과 이들 증권이 유통되는 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금융시장은 제도적인 정형성, 즉 금융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금융이나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금융시장(공금융시장)’과 ‘비제도금융시장(사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도금융시장’은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엄격한 규제와 제도적인 정형성을 가진 안전하고 영속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시장인 반면에, ‘비제도금융시장’은 개인간에 사적인 금전대차를 취급하는 비제도적이고 비정형화된 그리고 위험정도가 대단히 높은 사채시장을 말한다(도중진, 2002: 31-34).

## 2. 금융기관의 기능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의 중개역할을 하는 자를 통칭하여 ‘금융기관’이라 한다. 즉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금융거래(자금의 수요와 공급)를 매개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수의 자금 수요자와 다수의 자금 공급자간에 발생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업무 영역 등에 의해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한 정

보획득비용, 수요자와 공급자를 찾기 위한 탐색비용, 신용상태를 분석하고 책임지는 위험비용, 자금의 수요자를 감시하는 감시비용 등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규모의 경제를 이용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sup>3)</sup> 또한 금융기관은 자산변환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자금의 규모, 이용기간, 이자율 등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원하는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조정을 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금융기관은 금융유통과정에서 자금의 수요·공급을 매개함으로써 금융자금의 원활화와 확대를 도모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의 원천은 전통적으로 예금이며 이를 대출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능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기능이 이러한 점에만 한정된다면 금융기관은 신용매매기관에 불과하게 되어 전술한 자금수요의 확대라는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오늘날 금융기관의 기능은 단순한 신용의 매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원을 기초로 한 대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의 수급량을 확대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예치시킨 경우 일정율의 지급준비금을 時在金으로 남겨두고 예치된 예금의 수배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를 금융기관의 신용창조기능이라 한다.

### 3.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징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1950년대 한국은행의 창립을 비롯한 한국산업

3) 노스에 의하면 거래비용은 신고전파에서의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경제적 교환(economic exchange)에 수반되는 제 비용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상품의 질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드는 측정비용(measurement cost)과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감시·집행하는 비용(enforcement cost) 등을 포함한다(North, 1990: 27).

은행, 농업은행 등의 특수은행과 민간출자에 의한 서울은행이 설립됨으로써 금융제도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한 이래, 1980년대 이후에는 금융시장의 대외개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외국은행과 외국보험회사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여러 개의 시중은행과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이 신설되는 등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팽창하였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보다는 항상 자금의 수요가 많은 자금의 만성적인 불균형이 계속되어 왔고, 둘째 선진제국에 비하여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비교적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도한 보호로 인하여 경쟁원리에 의한 은행경영이 미흡하다 할 수 있으며, 셋째 금융기관 점포수의 급증에 따라 점포간에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었고, 넷째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직접금융에 비하여 간접금융의 비중이 크지만 전체 금융시장 중에서 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금융시장의 특징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부조리를 유발시키는가 하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경쟁은 그 출처가 투명하지 못한 지하자금의 세탁을 유인하는 계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정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금융시장이 가격원리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고 정책적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과 같은 유통시장에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의해 유통증권의 가격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심리나 해당 업체에 대한 소문 등에 크게 좌우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특성은 1997년 말에 닥친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부 종합금융사 등에 대한 영업인가취소, 부실은행정리, 합병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초래하였다

(도중진, 2002: 34-36).

#### 4. 금융기관의 종류

금융시장에서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관련기관,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 6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각 그룹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으로 구분된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무를 핵심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즉 지급결제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대상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여기에 분류되는 금융기관으로는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우체국(예금) 등이 있다.

보험회사는 사망, 질병, 농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험회사는 업무 특성과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수출보험공사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 보험회사 외에 재보험회사와 보

증보험회사가 있다.

증권관련기관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가 있다.

기타 금융기관은 앞에서 열거한 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분류하기 어려운 금융업무들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그리고 신탁회사 등이 있다.

금융보조기관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금융제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들이다. 여기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 금융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금중개회사 등이 포함된다(한국은행, 2005: 31-34).

## 5. 금융기관 범죄

일반적으로 금융범죄(Financial Crime)는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거나 금융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는 범죄 즉 부정음자와 관련된 범죄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의한 직무에 관한 범죄로 정의될 수 있다.<sup>4)</sup>

본 연구에서 금융기관 범죄(Financial Institution Crime)는 이러한 금융범죄(Financial Crime)의 개념을 금융시장의 주체 측면에서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 범죄란 금융범죄 개념에 따른 금융거래

4) 黒川弘務/藤永幸治編, シリ|リズ捜査實務全書5 証券・金融犯罪, 東京法令出版, 1997, 169面(도중진, 2005: 44).

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강도 등 금융기관 영업 현장에서의 범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금융기관 범죄의 범주에는 금융사기와 같은 금융거래상의 범죄만이 아니라 최근 빈발하는 금융기관 매장에서 의 강도범죄도 포함된다.<sup>5)</sup> 금융기관 범죄는 이처럼 금융기관을 위요한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제금융거래상의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5) 경찰청의 '2006 금융기관 강도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발생한 총 11건의 금융기관 대상 강도사건은 9월과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절반 이상인 6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7건은 무장한 경비원이 없는 시골 지소나 분소에서 발생했다.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는 '초미니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도 7건이었다. 발생 시간을 보면, 금융기관 마감시간인 오후 4시~5시30분 사이 4건, 점심시간이 포함된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3건이 발생했다. 마감시간과 점심시간에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범인들은 근무 인원이 더 적어지는 시간대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도사건을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경우 전체 9284개 점포 가운데 현금을 호송할 때 전문 경비업체를 이용하는 곳은 7.7%(711개)에 불과했다. 반면 은행권은 전체 6215개 점포 가운데 74.2%(4545개), 우체국은 2599개 가운데 29.9%(776개)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인력 배치도 마찬가지다. 은행권은 94.3%(5778개)가 경비인력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2금융권은 8.7%(808)에 불과했다. 우체국은 22.1%(574개)였다. 경찰청에서는 금융기관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안전 의식이 다소 소홀한 면이 있으며 특히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된다는 점 때문에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국내 주요 14개 금융기관의 안전책임자와 감독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금융기관의 자체 경비인력을 확충할 것과 연말연시 및 설날 전후 자율방범체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서울신문, 2006. 12. 5).

### Ⅲ. 국제금융범죄의 실태

#### 1. 국제금융거래사범의 유형

국제금융거래사범의 유형범주에는 외환거래 기본법규인 외국환거래법<sup>6)</sup> 위반에 의한 순수외환사범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사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자금세탁사범을 포괄할 수 있다.

국제금융거래사범을 최근 관세청 단속실적을 기준으로 개관하여 보면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제금융거래사범 전체 단속실적은 1,943건, 3조 6,984억원을 검거함으로써 2004년 단속건수 1,943건과 금액 3조 6,917억원에 비교하여 거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그중에서 국제금융범죄의 대종을 이루는 순수외환사범의 2005년 단속실적은 1,901건, 3조 5,558억원으로서 2004년 1,917건, 3조 6,626억원과 비교하여 건수 1% 감소, 금액 3% 감소로 나타나 역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표 3-1>.

6) 외환거래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① 백지형벌식 규제방식 ② 관계기관에의 권한 위임 또는 위탁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사법연수원, 2005: 115-116). 외국환거래법은 기술적으로 복잡다기한 외환거래의 특성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 국제거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 규제대상을 시행령(대통령령), 재경부장관 고시(외국환거래규정)로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장 등 관계기관에 재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3조 참조.

7) 관세청의 단속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찰청도 2004년에 264건, 7,963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다(경찰청, 2005).

<표 3-1> 국제금융거래사범 단속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순수외환 사범	1,917	3,662,560	1,901 (△1)	3,555,883 (△3)	96	267 (△26)	197,078 (△9)	80
재산국외 도피사범	21	18,611	27 (29)	81,625 (339)	2	3 (△57)	45,944 (472)	19
자금세탁 사범	5	10,555	15 (200)	60,920 (477)	2	2 (△50)	2,291 (△65)	1
합 계	1,943	3,691,726	1,943	3,698,428	100	272	245,313	10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구성비는 단속금액 대비.

자료: 관세청(2006. 1), 2005년도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 관세청(2006. 3), 2006년 2월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한편 재산국외도피사범은 2005년에 27건을 적발하여 전년도인 2004년 21건에 비하여 건수기준 29% 증가하였으며, 단속금액 기준으로는 816억 원에 이르러 2004년 186억 원에 비해 339%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재산도피의 탈법위험 증가에 대하여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환치기사범에 대한 당국의 집중 단속, 자금흐름 및 최종소재에 대한 추적강화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세탁사범은 2005년도에 15건, 609억 원을 검거하여 전년 5건, 106억 원에 비하여 건수기준 200%, 금액기준 477% 증가하였다. 재산국외도피사범 외에도 이러한 자금세탁사범의 단속실적 증가세는 정부 차원에서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 단속강화대책’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의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에 들어서 1-2월까지의 국제금융거래사범 단속동향을 보면 단속건수 272건, 2,453억원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7% 감소하고, 금액은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환사범은 267건, 1,971억원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26%, 금액 9%로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의 경우 총 5건, 482억원을 적발하고 특히 재산국외도피사범은 459억원을 적발하여 전년 동기대비 적발건수가 절반가량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금액은 472%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 2006년 상반기(2006년 1-6월)까지 국제금융거래사범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및 영수와 출국시 미신고 휴대반출 등의 검거 건수가 감소하고, 환치기계좌운영주 등 검거금액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15%, 금액 50% 각각 감소하였으나, 외국환허위신고에 의한 재산국외도피 등의 검거금액은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2006. 7).

위의 국제금융거래사범의 단속 결과를 통해 나타난 최근 검거사범의 유형상 특징은 순수외환사범의 비중이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특경법 위반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사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의한 자금세탁사범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3-2> 재산국외도피사범 단속실적

(단위: 백만원, %)

전제 법률	수 법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구성 비	건수	금액	구성 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환 치 기	11	2,638	15 (36)	8,995 (241)	11	-	-	-
	제3자 지급/영수	-	-	2 (-)	268 (-)	-	-	-	-
	가격조작	-	-	7 (-)	19,405 (-)	24	-	-	-
	외국환 허위신고	2	2,678	1 (△50)	1,583 (△41)	2	1	38,972	85
	자본거래	3	2,399	-	956 (△60)	1	2	6,972	15
	수출채권 미회수	1	656	-	-	-	-	-	-
	기 타	4	10,240	2 (△50)	50,418 (392)	62	-	-	-
합	계	21	18,611	27 (29)	81,625 (339)	100	3 (△57)	45,944 (472)	100

주: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에 의한 단속실적.

2)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구성비는 단속금액 대비.

자료: 관세청(2006. 1), 2005년도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관세청(2006. 3), 2006년 2월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이처럼 그 범죄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 사범의 검거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재산국외도피사범의 경우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 단속된 총 27건 중 환치기 수법이용 15건, 가격조작 수법이용 7건으로 건수기준 환치기 및 가격조작에 의한 재산도피가 전체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재산국외도피사범은 2006년도에 들어 2월까지 외국환 허위신고를 이용한 수법이 1건 390억원, 자본거래를 이용한 수법이 2건 7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금세탁사범은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도 총 15건 단속에 금액기준 609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세탁사범의 주요 수법은 가격조작 5건, 환치기 3건, 제3자 지급 2건, 차명계좌이용 2건 등 대부분 가격조작과 환치기 수법에 의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 2월까지 적발된 자금세탁 2건은 수입대금 과다송금 및 허위수출대금영수에 의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자금세탁사범의 증가세는 2005년 건수기준 200%, 금액기준 477% 증가가 보여주듯이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증가세보다도 높다.

<표 3-3> 자금세탁사범 단속실적

(단위: 백만원, %)

진제 법률	수 법	2004년 1-12월		2005년 1-12월			2006년 1-2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구 성 비	건수	금액	구 성 비
관세법	국내금융 거래이용	-	-	2	3,680	6	-	-	
	외국환 거래이용	-	-	3	4,991	8	-	-	
	자산취득 이용	-	-	2	726	1	-	-	
	기 타	-	-	1	10,141	17	-	-	
특경법	외국환 거래이용	4	10,519	4 (0)	35,358 (236)	58	2 (100)	2,291 (155)	100
	비금융 기관이용	-	-	1	1,314	3	-	-	
대외 무역법	외국환 거래이용	1	36	1 (0)	2,799 (7,584)	5	-	-	
	기 타	-	-	1	1,911	2	-	-	
합	계	5	10,555	15 (200)	60,920 (477)	100	2 (△50)	2,291 (△65)	100

주: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의한 단속실적.

2)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구성비는 단속금액 대비.

자료: 관세청(2006. 1), 2005년도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관세청(2006. 3), 2006년 2월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발표에 따를 때에도 이러한 자금세탁 적발이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들어 돈세탁을 하려다 적발돼 기소·고발 등으로 법 집행기관에 의해 종결 조치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바, 2006년 1-5월까지 5개월 동안 자금세탁 혐의로 조치된 건수만 3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이는 지난 2001년 11월 28일 FIU가 출범한 뒤 2002-2005년까지 4년 동안 기소·고발 조치된 건수(444건)와 비교할 때 매우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인 것이다.

2006년 1-5월까지 조치된 내역을 집행기관별로 살펴보면 주금 가장 납입이나 횡령 등으로 검찰청에 의해 기소된 건수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세청이 범칙금을 물리거나 형사고발한 건수가 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3-4> 자금세탁 혐의거래정보의 집행기관별 처리현황(2006. 5월말 기준)

(단위: 건)

기관	제공	종결				처리중
		계	조치*	무혐의	내사중지	
검찰청	1,381	790	365(272)	353	72	591
경찰청	770	249	45(2)	184	20	521
국세청	694	102	76(0)	26	-	592
관세청	1,134	370	287(67)	80	3	764
금감위	72	37	11(0)	26	-	31
선관위	10	10	1(0)	9	-	0
계	4,061	1,558	785(341)	678	95	2,499

주: 1) ( )는 2006.1-5월간 조치 건수.

2) \*는 기소(검찰), 기소의견 송치(경찰), 추정·통고처분·고발(국세청), 고발 또는 기관경고(금감위) 등.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2005), 2006. 6; 재정경제부,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 등 입법예고, 2006. 6. 7.

FIU는 출범 이후 2002년부터 2006년 5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만 8,793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4,061건의 정보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감위·중앙선관위 등 6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자금세탁 혐의가 발견돼 기소·고발·추징 등 조치된 건수는 785건으로 전체 수사·조사 종결사건 1,558건의 50.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제공되는 정보의 전제범죄로 조세부정환급 및 환치기 사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조치율이 각각 74.5%와 77.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금세탁 혐의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금융기관들의 혐의거래 신고대상이 5,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많아진데다 온라인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FIU에 신고한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며, 특히 지속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해외 반출입이 쉬워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 2. 주요 수사사례

### 1) 관세청

●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4,300억원 상당의 사상 최대 불법외환거래 조직 검거, 관세청 보도자료, 2004. 5. 31.

【개 요】 관세청 서울세관은 2004년 5월 28일 47,000여명이 입출금한 51개의 환치기 계좌로 4,3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총 21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대형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주범 조모씨 등은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환치기계좌 총 51개를 개설하여 199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9,872회에 걸쳐 건당 5-20불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무역대금 및 재산도피성자금 등에 대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알선해 왔으며, 특히 박모씨는 상기 환치기

계좌를 운용하여 얻은 수수료 4억원 상당을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을 호주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법조 및 향후 조치사항】 관세청은 그 동안 상기 환치기계좌에 무역대금 등을 송금한 이모씨 외 5명은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는 한편, 한국·호주·베트남에서 무역대금 등을 입·출금한 47,000여명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추적하는 등 또 다른 대형 환치기계좌 운용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의 외환사범 단속에서는 이러한 대형 사건 외에도 범죄수법 측면에서 한층 지능화된 다음과 같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무역회사대표(총책)· 환전상(불법환전 담당)· 보따리무역상 대표(세관신고 면제금액 이하로 분산 휴대반출할 운반책 모집담당) 등이 낀 신종환치기 사례.

- 은행직원 출신의 환전상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타인명의로 허위실명 확인을 받은 후,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국외송금을 주도한 사례.

-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고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재산을 도피한 사례(관세청 보도자료, 2005. 6. 22).

## 2) 경찰청

- 필리핀으로 약 527억원의 외화를 유출한 환전상·무역업자 등 환치기사범 51명 적발(구속 1, 불구속 48, 수배 2), 경찰청 보도자료, 2004. 9. 16.

【개 요】 경찰청(외사3과)은 2002. 4월 - 2003. 11월 필리핀 소재 H호텔 내에 ‘H 금융’을 차려놓고 국내에 제3자 명의의 계좌 11개를 개설하여 필

리핀 여행자나 무역업자들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은 다음 필리핀 현지에서 폐소貨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총 4,125회에 걸쳐 약 144억원을 환전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등 51명을 적발하였다. 대부분 무역이나 여행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H 금융’, ‘S 금융’, ‘O 금융’ 등 필리핀에 거주하는 아국인 환전상을 통해 1년 8개월에 걸쳐 527억원(약 4천 4백만 달러)을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법조 및 향후 조치사항】 환치기사범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과 함께 경찰에서는 해외 투자 또는 부동산 구입 등을 목적으로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3. 국제금융범죄의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금융범죄 실태와 수사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외환자유화 추세에 편승하여 시민과 업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행위자들이 불법적인 외환거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 검거 추세와 사례를 보면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큰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이 향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금융범죄 수사사례 중 범죄수법 측면에서 보이는 지능화 추세를 볼 때 전통적인 수법인 환치기, 은행에 의하지 않은 불법송금, 무역가장, 미신고 반출입을 이용한 외환범죄 외에도 해외투자 빙자,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역외펀드(off-shore funds) 설립 등 새로운 수법에 의한 국제금융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사범연

수원, 2005: 150). 즉 투자수익금 반입실적이 거의 없는 해외투자, 해외대출(본사보증)과 비자금 구좌를 운용하는 조세회피지역 페이퍼 컴퍼니, 외국자본을 가장하여 국내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소비하는 역외펀드의 활동 등 더욱 지능화된 외환범죄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을 이용한 국제금융범죄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8)</sup> 종래의 국제상품거래 세금 탈루는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하여 소득의 일부를 조세회피지역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자본거래와 서비스, 무형자산 등 국제거래는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여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대규모 탈세를 하는데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수범 또한 국내발행 전환사채(CB) 헐값인수, 외자유치 위장 등과 같이 그 수범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즉, (i) 국내대부 투자자금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경유시킴으로서 이자소득세 회피, (ii) 조세회피지역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시키고, 이를 경유 기술도입계약을 체

8) 조세회피지역은 무세국(tax paradise), 국외소득면세국(tax shelter), 특정법인 및 사업소득 면세국(tax resort), 저세율국(low-tax haven)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무세국(tax paradise)이란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바하마, 버뮤다군도 등이 있다. 국외소득면세국(tax shelter)이란 소득, 자본 등에 대한 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지는 않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홍콩,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을 들 수 있다. 특정법인 및 사업소득 면세국(tax resort)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가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저세율국(low-tax haven)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시프러스, 바레인, 모나코, 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OECD는 조세회피지역(tax haven) 판정기준으로 ① 소득(금융, 서비스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No or only nominal taxes), ② 국가간 과세정보 교환에 비협조적(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③ 조세감면법령 또는 행정관행의 투명성 결여(Lack of transparency), ④ 상당수준의 기업활동 부재(no substantial activities: 2001년초 거주자 격리기준으로 변경)의 4가지에서, ①을 만족시키면서 ②, ③, ④ 중 하나를 만족시킨 경우 조세회피지역으로 판정하고 있다. 2000년 OECD는 총 35개국의 조세회피지역을 발표하였으며, 이중 17개가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하며 2/3이상이 영국령에 속하고 있다.

결하여 사용료(로얄티)에 대한 과세 회피, (iii) 조세회피지역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 이를 통하여 국내 부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iv) 조세회피지역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계열 회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v) 조세회피지역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외자유치를 가장하여 주가조작 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법 세율 구조를 가지고 국제거래 관련 조세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국가, 즉 조세회피지역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낮거나 아예 없으며, 비실명 금융거래를 보장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나 돈세탁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래 조세회피지역은 각 국 기업을 몰려들게 하여 언어 질 부수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목적으로 세금우대 지역을 만들게 된 것인데, 점점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 등 부정적 효과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회피지역 폐해의 실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대국제자본 등이 세금없는 막대한 이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세금회피는 거대 국제자본 또는 불법조성자금이 세금부담 없이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게 된다. 조세회피지역이 이러한 거래에서 취하는 이득은 건당 수백불 또는 수천불에 불과하나, 상대국가의 조세 손실은 경우에 따라 건당 수백만불 또는 수천만불에 달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거대 국제자본 또는 불법조성 자금 등이며,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면 이들이 잠식한 만큼의 세 부담은 결국 국내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외화유출 등 국부유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세회피지역 거래는 조세회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외화유출의 가능성과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창구로도 이용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셋째,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도 또한 문제이다. 그리

고 이러한 폐해는 국제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경제(global economy) 체제 아래서 더욱 커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유치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천현, 2002).

이러한 국제금융거래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이후, 자금 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므로 수사 난이도가 높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수사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관세청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외환자유화 속에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국제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국제금융범죄 대응방안

본 연구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 모델(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rime Response System, 이하 IMCRS)에 따라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범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에서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범죄대응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제도화 과정을 문제 발생과 쟁점의 확인, 법규와 조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설계, 범죄대응을 위한 절차 및 관행을 제도화하는 집행, 그리고 환류에 의한 순환과정으로 본다(정웅, 2006). 본 연구에서는 IMCRS에 따른 외환범죄 대응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도 설계(institutional design) 단계에서 법규 개선과 전문수사부서 확보, 제도 집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법규의 개선

우리나라의 현행 외환거래법규체계는 크게 기본법규와 관련법규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외환거래 기본법규에는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고시)과 통칙,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절차, 각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이 포괄된다. 외환거래 관련법규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증권거래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규체계 하에 외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금융거래사범의 단속 결과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불법자금의 이동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사범,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등 반사회적 국제금융사범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해외 반출입이 쉬워진 것에 대비하고 특히 마약·테러를 위한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및 불법 휴대반출입, 자금세탁 등 외환자유화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법행위로 남아있을 분야에 대비하여 법적인 장치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지난 2006년 6월 불법테러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비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이하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2006. 6. 7).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 규정, 테러관련자의 지정 및 금융거래의 제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테러자금 동결명령,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포함되어 있다. 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는 테러자금조달행위도 자금세탁행위와 함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혐의거래보고·고객알기제도 등을 적용받도록 명시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경간 이루어지는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sup>9)</sup> 즉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등의 휴대수출입 등에 관한 허가·검사권 및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수행하고 있는 관세청에 대하여 국경간 휴대수출입을 통한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테러의 신속한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서도 현금·유가증권 등을 휴대한 국경간 이동을 통한 테러자금 조달가능성에 대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통해 이번에 도입되거나 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인 FATF<sup>10)</sup> 등에서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제도의 도입으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 테러자금조달억제법(안) 부칙 제2조 제2항.

10)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1990년에 설립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31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25개국이 미국·영국·일본 등 OECD 회원국이다. 한국은 2007년 1월 현재 미가입 상태이다.

## 2. 전문수사부서의 확충

경찰청과 관세청 등은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느슨한 외환제도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 점증하는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밀수와 상표법 위반 등 범죄수익의 발생 및 은닉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의 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을 통하여 국제금융거래사범 감시단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능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국제금융범죄에 대응하여 경찰청 외사국 및 수사국, 관세청 외환조사과 등에 전문수사조직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담부서는 기존의 순수외환범죄를 비롯한 재산국외도피범죄, 자금세탁범죄 수사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의 국제금융범죄 중심 수사부서로 발전돼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수사요원의 양성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금융경제관련 법제도의 이해, 국제금융경제정보의 수집 및 분석, 수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해당 부서의 전문수사요원들이 불법외환거래 예컨대 무역가장, 채권 미회수, 환치기, 제3자 지급영수, 미신고 반출입,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관련법규 위반과 의율가능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존 국내범죄수사 차원과는 다른 국제적 공조수사 및 금융계좌추적 수사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환범죄를 비롯한 국제금융범죄 증가에 대비하여 경찰청 및 관세청의 해외주재관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외주재관 증원을 통해 주재국 세관 및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국제수사공조, 해외 외환사범 국내송환, 각종 국제금융범죄 정보수집 등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면서 국제금융범죄에 대응한 우리 당국의 국제적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감시단속시스템의 고도화

최근 국제금융범죄는 단속실적과 수사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은 반사회적 외환사범, 지능화된 외환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양상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한정된 조직과 인력 하에 범죄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유관기관을 포괄한 거시적 측면에서 감시단속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특히 요구되는 것은 탈법행위 적발과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적실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적시성(timeliness), 완전성(completeness), 필요성(necessity)을 갖추어 생산해 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다(정재완, 2005: 17).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6년 5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외환전산망 정비 및 산출 자료(output data)의 활용성 제고 등을 통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정부 기본 방침과 궤를 같이 하여 외환전산망을 통해 입수하는 외환자료에 대한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Customs Data Warehouse), 연관관계분석(Link Analysis) 등 선진 분석기법에 의해 불법 국제금융거래사범을 적발하였으며<sup>11)</sup>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거래자료 뿐만 아니라, 국세청·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세적자료, 출입국자료, 불법외환거래자료와 상용정보인 국내외기업신용정보 등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입수·관리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외환자료를 기초로 보다 과학

11) 관세청은 위 선진 분석기법을 통해 2006년 1-11월말까지 전체 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금액 2조 7,092억원의 61%를 차지하는 1조 6,55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 12. 13).

적인 정보분석기법을 개발, 거래유형별·특정지역별·반복거래나 거액거래 등 테마별로 외환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혐의분석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외환자유화에 편승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테러, 마약, 밀수, 지적재산권위반 등 불법자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는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가칭)의 구축을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에서 구축된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과의 연계 및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과거 컴스탯(Compstat)과 경찰범죄통계(일명, 202통계)를 통합하고 범죄지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과학적인 현장수사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에서 수집된 수사자료와 범죄정보를 적극 공유·활용함으로써 갈수록 지능화·다양화·광역화되어 가는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4.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경찰청과 관세청 이외에도 정부의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시민 등이 모두 국제금융범죄대응에서 현실적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의 참여·협조는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에 중요한 성패 요인이다. 즉 범죄대응체계의 제도화를 지향하며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해당사자간 강력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의 형성에 의한 상호 협력(collaboration)과 네트워크(network)의 구축이다.

따라서 경찰청과 관세청 등은 먼저 국제금융범죄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에 국제

금융범죄 감시단속 및 정보교환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상호협력관계를 제도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 유관기관은 정보·수사자료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무역·금융 관련 업체와 시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관계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으로부터 참여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자율적 법규준수(Informed Compliance) 제고, 정보수집 범위의 확대 및 수사협조를 기할 수 있는바 또한 여기에는 관계 당국의 협력업체에 대한 편의적 통관서비스 제공과 탈법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12) 테러자금조달억제법(안)에서도 관계기관 간의 협력 의무를 담고 있다. 즉 FIU·검찰·경찰·국정원·관세청 등은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통한 테러의 신속한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과,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테러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안) 제11조.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_\_\_\_\_(2006), 『경찰백서』.
- 관세청(2006. 1), 『2005년도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 \_\_\_\_\_(2006. 3), 『2006년 2월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 \_\_\_\_\_(2006. 7), 『2006년 6월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 국민경제자문회의(2005. 6. 3), 『금융허브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 남중현, 설동규(1996), 『APEC지역에서의 자본이동성 변화와 한국경제』, 한국금융연구원.
- 도중진(2002), 『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기륜(2004), 『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 사범연수원(2005), 『경제범죄론』.
- 양두용 외(2004),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정근(1997. 7), 『資本自由化와 國際收支-동아시아의 經驗-』, 한국은행.
- 이종덕·박경훈(2005. 12),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현황과 향후 과제』, 『외환국제금융 리뷰』, 한국은행.
- 이천현(2002),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재정경제부(2006. 5. 19),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 정 웅(2006),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범죄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2007), 『외환자유화에 따른 탈법위험과 외환범죄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8(1), 한국관세학회.
- 정재완(2005), 『국경절차에 대한 가치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6(3), 한국관세학회.
- 한국은행(2005),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North, D. C.(1990),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bstfeld, M.,(1993),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the 1990s”,  
*NBER Working Paper*, No. 4534, NBER.
- OECD(2004), *OECD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책임연구보고서 2007-21

## 금융기관 범죄의 유형분석과 대책: 국제금융범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attern Analysis of financial Institution Crime and  
Countermeasures

---

---

2007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